
1381 해외인증자료



작성일자 2025.04.30. 기준,
무단 도용 배포 금지

(문의)

EU 각국의 플라스틱세 및 관련 규제

아래에는 해외 원문 문서를 번역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1381인증·표준정보센터는 원칙적으로 해외 원문 문서의 번역서비스를 하지 않으며, 간혹 경우에 따라 일부 내용을 번역할 경우에도 그 번역의 완전성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문서 번역은 업체의 몫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문서 내 링크 또는 문서 하단 ※ 자료 출처의 링크를 통해 원문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품에 해당 규제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제품 사양을 근거로 업체에서 직접 판단하시거나 관련 기관으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저희 1381인증·표준정보센터는 국내/해외의 법률적 유권해석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EU 회원국의 플라스틱 과세 및 부과금

2021년 1월 EU는 플라스틱 생산자에 직접 책임을 묻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플라스틱세**'를 도입하였습니다. 관련 법안에 따르면, EU 회원국은 기업들이 신고한 내용에 따라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1kg 당 80센트(0.8유로)를 세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동 규정에 따라 최근 몇 년간 EU 개별 회원국은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별로 규정과 조치를 시행하기 시작했으며, 현재 각 회원국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법률과 부과금 및 세금의 다양한 조합이 존재합니다.

▶ 기존 조치는 4가지 범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플라스틱 및 플라스틱 포장재(PPT),
- 일회용 플라스틱(SUP)에 대한 규제 금지 및 표시 요구 사항
- 폐기물 처리 시스템에 대한 생산자 책임 확대(EPR) 수수료 및 라이선스 요구 사항
- 폐기물 청소 비용에 대한 폐기물 부과금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여러 EU 국가에서는 새로운 세금, EPR 시스템, 일회용 플라스틱 및 관련 제품에 관한 기존 규정 변경 등 다양한 조치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플라스틱 포장재의 재료 구성 및 재생 플라스틱 함유율을 포함하는 재활용 평가 관련 기준을 만들거나, 비재생 플라스틱에 대한 과세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관련 규정은 EU 각 회원국 별로 다르기 때문에** 플라스틱 생산자, 유통업체 및 소비자는 각 국가의 수많은 조치를 인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프랑스

프랑스 또한 독일과 같이 유럽연합의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지침」에 따라 2020년 「낭비방지 및 순환 경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환경법전」을 개정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환경법전」에 따라 프랑스는 **2040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프랑스 정부는 2021년부터 “3R 전략”을 통해 탈플라스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R 전략"이란 탈플라스틱 정책을 위한,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Réduction), 재사용(Réemploi), 재활용(Recyclage)**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한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목표는 프랑스 정부가 강조해온 ‘3R(Reduce, Reuse, Recycle)’ 원칙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 사용량을 20% 감축, 최소한 절반 이상은 재활용을 통해 감축
- 2025년까지 불필요한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 100% 제거
- **2025년 1월 1일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재활용 100% 달성**
(이를 위해 시장에 출시되는 플라스틱 포장재는 재활용 가능한 성분으로 생산해야 함)

프랑스 정부는 낭비방지법 등에 의거해 2025년 1월 1일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재활용 비율 100%를 목표로 하고 있고, **2040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전면 금지**할 예정입니다. 낭비방지법의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1년 1월부터 빨대 및 일회용 식기**, 테이크아웃용 컵 플라스틱 뚜껑, 발포 폴리스티렌, 스티로폼 지 상자 사용금지, 음식용 꼬치 등 **생활 플라스틱 용품의 사용을 전면 금지**시키며, 공공시설에서 플라스틱병 무료 제공하는 것과 일회용 비닐 백 생산 및 수입 또한 금지
- 2022년 1월부터 1.5kg 이하 과일과 채소 판매 시 비닐봉투 금지, 생분해되지 않는 플라스틱 티백을 비롯한 패스트푸드점의 플라스틱 장난감 배포 금지
- 2023년 1월부터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회용 용기 사용 금지**, 2023년 4월부터는 상점의 종이 영수증도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공 금지 예정
- 2024년부터 미세플라스틱이 포함된 의료용품과 기구에 대한 판매가 금지될 예정
- 2025년부터 1월 1일부터 일회용 PET 음료수병에 최소 25%의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 의무를 부과, 신형 세탁기에 플라스틱 미세섬유 필터 장치 장착 의무
- 2026년 1월 1일부터 물로 씻어내는 화장품(샴푸, 염색제, 샤워젤, 클렌저 등) 중 미세플라스틱 함유 제품 판매 금지
- 2030년 1월부터 일회용 PET 음료수병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 비율을 30%로 확대
- 2030년부터 플라스틱 일회성 병 수를 50% 감소
- **2040년에는 일회용 플라스틱을 전면 금지**

▶ 영국

- 2022년 4월부터 플라스틱 포장세(Plastic Packaging Tax) 도입,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 지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조세 제도 도입
- 플라스틱 포장세로 거둬들인 세금은 기업이 재활용 플라스틱을 포장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제적 인센티브로 활용
- 재활용 플라스틱 비율이 30% 미만인 플라스틱 포장재를 제조·수입할 경우 톤당 217.85파운드(한화 약 40만 원) 부과
- 2022년 4월 도입 당시 톤당 200파운드(한화 약 원)에서, 2023년 4월부터 톤당 210.82파운드(한화 약 36만 원), **2024년 4월 1일부터 217.85파운드로 세율 인상**
- 공급망 내에서 사용하거나 소비자가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플라스틱 포장에 세금 부과
- (공급망에서 사용하는 포장) 제조업체에서 소비자에게 이르기까지의 공급망 내에서 사용되며, 단독 또는 다른 포장과 조합하여 사용. 상품을 담거나 보호·취급·제공·운반 기능 중 한 가지 이상을 수행해야 함(예. 생고기를 감싼 필름, 식품 보호 필름 등)
- (소비자가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포장)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소비자가 한 번 사용할 목적으로 설계된 포장으로, 상품이나 폐기물을 담거나 보호·취급·제공·운반 기능 중 한 가지 이상을 수행해야 함(예. 쓰레기 봉지, 일회용 플라스틱 그릇 및 접시, 자판기용 일회용 플라스틱 컵 등)
- 포장재가 여러 요소로 구성된 경우 각 구성요소에 대해 세금 납부

<영국 플라스틱 포장세 부과 대상>

구분	설명
공급망에서 사용하는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체에서 소비자에게 이르기까지 공급망 내에서 사용되며, 단독 또는 다른 포장과 조합하여 사용 - 상품을 담거나 보호·취급·제공·운반 기능 중 한 가지 이상을 수행 - 예) 생고기를 감싼 필름, 식품 보호 필름, 비스킷 포장지 등
소비자가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소비자가 한 번 사용할 목적으로 설계 - 상품을 담거나 보호·취급·제공·운반 기능 중 한 가지 이상을 수행 - 예) 쓰레기 봉지, 일회용 플라스틱 그릇 및 접시, 자판기용 일회용 플라스틱 컵 등
*출처: Packaging in and out of scope of Plastic Packaging Tax(2022.10.12.), 영국 정부 포털(www.gov.uk)	

- 기한 내 플라스틱 포장을 제조·수입하였거나 제조·수입할 예정인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는 영국 국세청(UK HMRC)에 등록 및 세금 납부
- 향후 30일 이내 플라스틱 포장 구성품(완제품)을 영국 내에서 제조하거나 영국으로 수입하는 경우, 지난 12개월 이내에 플라스틱 포장 구성품(완제품)을 영국 내에서 제조하였거나 영국으로 수입한 이력이 있는 경우 플라스틱 포장세 부과 대상에 해당
- 기업 등록 시 ①플라스틱 포장 완제품의 예상 무게(향후 12개월 내에 제조·수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무게, 지난 12개월 내에 제조·수입한 무게, 향후 30일 내에 제조·수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무게) ②사업체 유형 ③Companies House에 등록된 사업체 주소 ④사업체 연락처 ⑤참조번호(회사등록번호, 국민보험번호, 고유납세자번호, 자선단체 등록번호 등) 등 제출

▶ 스페인

2023년 1월 1일부터 재활용 불가능한 플라스틱 포장재에 kg 당 0.45유로(한화 약 673원)의 세금 부과
 - 한 달에 5kg 이상의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를 생산·수입하는 업체가 납세 주체에 해당

▶ 포르투갈

2022년 7월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에 대한 세금이 도입되었으며, 2023년 9월 1일부터 알루미늄 포장에 대한 세금 도입 - 2024년 국가 예산법에 따라 즉석섭취식품에 사용되는 일회용 포장재에 대한 세금은 패키지당 0.30유로(한화 약 448원)에서 0.10유로(한화 약 149원)로 감소

▶ 이탈리아

2026년 7월부터 kg 당 0.45유로(한화 약 673원)의 플라스틱 포장세를 도입할 예정
 - 세금은 '합성 유기 중합체로 구성된 플라스틱을 사용하여 만든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상품 또는 식품을 배송, 취급, 보호, 방지하기 위한 용도)'에 적용될 예정이며, 해당 제품의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비EU산 제품의 경우), 구매업체(EU회원국산 제품의 경우)가 부담함

▶ 폴란드

2023년 7월 일회용 플라스틱 보증금 환급 제도 도입
 - 일회용 또는 재사용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음료(3ℓ 이하의 일회용 플라스틱 병, 1ℓ 이하의 금속 캔, 1.5ℓ 이하의 재사용 가능한 유리병) 판매 시 보증금을 징수한 후 포장 반환 시 최종 소비자에 보증금 환급

▶ 네덜란드

플라스틱 포장 기여금(Contribution) 징수
 - 네덜란드는 2008년 1월 1일부터 2013년 1월 1일까지 포장재(플라스틱 포장재 포함)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 바 있음
 - 국가 차원에서 플라스틱 포장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 플라스틱 포장에 대해 기여금 명목으로 kg 당 1.22~1.32유로(한화 약 1,824~1,973원) 징수(공식적인 세금은 아님)

<네덜란드 플라스틱 포장 기여금 제도>

구분	설명
납부 대상	- 네덜란드 시장으로 플라스틱 포장을 5만kg 이상 반입하는 기업 - 수입 후 5만kg 이상의 플라스틱 포장을 처리하는 기업
기여금	- 형태 안전성((dimensionally stable) 플라스틱 : kg 당 1.22유로(VAT별도) - 유연성(flexible shape) 플라스틱 : kg당 1.32유로(VAT별도) - 재사용 가능한 포장재 : kg 당 0.015유로(VAT별도) - 재사용 가능한 플라스틱 : kg 당 0.10~0.50유로 할인 - 일회용 플라스틱 : 1,000개당 2.30유로 추가 징수
출처 : 네덜란드 기업청(https://business.gov.nl)	

※출처

- KATI : 주요국 플라스틱 포장 사용 규제 동향(2024-11-06)
https://www.kati.net/board/reportORpubilcationView.do?board_seq=101436&menu_dept2=49&menu_dept3=53
- KATI : 프랑스 낭비방지법과 친환경 패키징으로 변화하는 프랑스 음료 시장
https://www.kati.net/board/boardView.do?board_seq=97324&menu_dept2=35
- KOTRA 해외시장뉴스 : 독일 플라스틱 포장용품 시장 동향(2024-07-29)
<https://me2.do/5CWecs8l>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해외인증자료 신청 방법

해당 자료는 제품 분류 및 품목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 및 절차로서, 세부 품목에 따라 별도의 절차 및 규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에서는 국내기업의 해외수출에 필요한 국가별, 제품별로 적용되는 강제 규제 또는 특정 인증에 대하여 해외정보자료를 무료로 조사하여 드립니다.

해외인증자료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자료실에 첨부되어있는 '1381 해외인증자료 신청 방법' 파일을 다운로드, 절차를 참조하시어 신청하시면 제품에 대한 해외 국가의 규제 및 인증 관련 자료를 조사해 드립니다.

문의처

상기 자료는 인터넷 상에서 무료로 공개된 자료를 대상으로 검색한 결과로써 귀사에서 본 자료를 활용 할 시 정확한 사실 여부를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요기간, 가격 등의 상세 실무정보 및 최신 현지정보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싶으시다면 유럽 현지의 수입업체, 현지 KOTRA 무역관, 컨설팅 업체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문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나라별로 통용되고 있으나 비강제 인증의 성격을 띠고 있는 인증도 있습니다. 실제로 비강제 인증의 성격을 띠고 있는 품질인증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제조자가 자율적으로 받거나 현지 수입자가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제조자가 현지 시장동향과 주요 타겟층 설정 및 소비자 특성에 따라 전략적으로 판단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현지 동향이나 업계 요구사항, 인증 신뢰도, 소비자 선호도 같은 최신 현지 정보는 해당 지역 업계 및 소비자에게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입업자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하며 KOTRA 현지무역관에 수출관련 무역정보 및 시장정보를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KOTRA 유럽지역본부 <https://www.kotra.or.kr/subList/2000005998/ovrskkbc/selectOvrskkbcDetail.do?deptCd=9500>
독일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프랑스 파리 무역관, 스페인 마드리드 무역관, 이탈리아 밀라노 무역관 등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http://eu.kita.net/>

- KITA 디지털 무역상담 플랫폼 (TEL : 1566-5114)
<https://www.kita.net/expertHub/main.do>

유의사항

기업의 수출활동과 관련이 없는 학술·학습 목적의 문의, 해당조사를 통해 수익활동을 하는 컨설팅, 대행기관 등으로부터의 문의는 대응이 불가능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 실무(비용, 소요기간)와 관련된 문의는 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인증기관 및 컨설팅업체에 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저희 정보센터에서는 대행기관(컨설팅회사)을 추천해드릴 수 없습니다. 관련 대행기관들은 인터넷 포털에서 검색으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에 등록된 컨설팅기관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컨설팅기관검색
<https://www.smes.go.kr/globalcerti/info/concList.do?key=9093>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전담대응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주요 인증분야(CE, NMPA, FDA, CPNP, NRTL, FCC, IECEE, PSE 및 ESG·탄소중립 분야)에 대한 전담대응반을 설치하여 유선·모바일·온라인 등을 통해 상시 문의사항 상담 및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해외시장 진출(예정) 중소기업
2. 지원내용 : 주요 인증 분야 (유럽 CE, CPNP, 중국 NMPA, 미국 FDA, NRTL, FCC, IECEE, PSE 및 ESG·탄소중립)에 대한 문의 사항 상담 및 교육 지원
3. 상담절차 : 상담 채널 (유선/모바일/온라인) → 주요 인증 분야 문의 → 애로 해결 지원 (유선/1:1상담/게시판 답변)



4. 문의처
 - 유선 ARS 대표번호 : 1577-9911
 - 모바일 카카오톡 채널 검색 : 해외규격인증 전담대응반
 - 온라인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 전담대응반 (<https://www.smes.go.kr/globalcerti/user/exclusiveCharge/exclusiveChargeOnaList.do>)
5. 운영방법
 - 관리기관 내 대응 채널(유선-ARS, 모바일-카카오톡 채널, 온라인-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하여 상시 애로 접수·상담 운영
 - 미 해결시 방문형 컨설팅과 연계하여 인증전문가 현장 방문을 통한 심층 지원
 - 중소기업 인증 담당자의 인증획득 성공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인증 교육 실시

※ 주 의 !

1381인증표준콜센터는 해외원문문서의 번역 서비스를 하지 않으며, 간혹 경우에 따라 일부 내용을 번역할 경우에도 그 번역의 완전성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문서 번역은 업체의 몫입니다. 상기 안내 사항은 각 항목 하단에 링크된 참고와 출처 페이지의 일부내용을 발췌, 번역한 것으로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아래의 자료 참고, 출처 링크에서 원문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자료는 온라인 정보에 근거하여 정리한 내용으로 귀사에서 본 자료를 활용할 시 정확한 사실 여부를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 및 소요 기간은 귀사 제품에 적용되는 시험 항목, 시험 기관, 귀사의 관련 서류제출 및 대응 속도에 따라 변수가 있는 사안이므로 해당 인증을 진행하는 인증기관/시험기관의 실무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귀사 제품의 사양과 함께 해당 인증기관에 연락하여 견적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닌 단순 참고자료이므로 각종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효력이 없습니다. 1381콜센터에서 제공한 정보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우리 센터에 즉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이 제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닙니다. 따라서 각종 신고, 이의제기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자료는 무단 수정/배포 불가합니다.

